

의 정 정 보

2007 - 6

6. 12

1.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2.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8
3.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28
4. 지방의원 신분변동 보도 관련 동향.....	46
〈부록〉 : 행복한 책읽기	47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국회의원의 정책간담회(세미나) 개설·운영 관련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김교흥[인천서구 강화군(갑)]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역구내 당원을 중심으로 ‘정책간담회(세미나)’를 운영할 예정임.
정책간담회(세미나)는 주 1회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로 운영될 예정임.
위와 같은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예. 지역개발·교통·환경정책 등과 관련하여 참석자간 토론, 전문가의 견 청취, 묻고 답하기 등 회의·세미나 개최)

《답 변》

귀문의 경우 선거기간전에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개최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임. (2007. 6.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 부패추방 및 클린 대선 2007 시민걷기대회 행사 개최 관련

《질 의》

공정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부패감시시민연대에서는 부패추방과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깨끗하게 치러 온 국민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한강시민공원일대에서 ‘부패추방 및 클린 대선2007 시민걷기대회’를 개최(2007. 10. 20경)하고자 하오니 다음 사항을 검토하시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회명의 선거법 합법성 여부
2. 대선후보와 각 정당 관계자를 초청할 계획인바 선거법 허용범위
3. 기타 행사시 유의해야 할 선거관련 사항

《답 변》

귀 단체가 「공직선거법」 제10조에 따라 공명선거추진활동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귀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 또는 불공정한 활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2007. 6.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3 입후보 예정자 서적광고 관련

《질 의》

폐사는 '기파랑'이라는 출판사로 2006년 3월에 출간 된 <벼랑끝에서 만나는 처칠>이라는 책의 광고를 하려 합니다. 해당 도서 출간시 (2006년 3월 ~ 4월) 이미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광고했었으며, 홍보 전략상 판매량이 많았던 도서 중 광고효과를 거두었던 도서들에 대해 일괄 재광고를 시행하려 합니다.

그 중 <벼랑끝에서 만나는 처칠> 저자인 '김형진' 변호사가 2008년 6월 일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예정이기에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시 : 2007년 5월 ~ 7월(3개월간)
2. 장소 : 3호선 지하철 내부
3. 내용 : <벼랑끝에서 만나는 처칠> 책 광고
 - 메인카피 : 본문 내용 중 '죽고싶을 만큼 힘들다면 처칠을 보라!'
 - 사진사용 : 윈스턴 처칠, 저자(김형진) 사진, 도서 표지 사진
4. 주체 : 도서출판 기파랑
5. 목적 : 도서 홍보 및 판매 촉진

《답 변》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기 위한 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7. 5.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4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애인시설 보완사업 관련

《질 의》

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복지TV는 장애인과 노인복지사업의 제반지원과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단복지법인 공동리복지재단의 산하기관으로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의 실현을 위하여 24시간 수화·자막·화면해설방송, 드라마·뉴스·다큐 등의 장애인용 재제작·방영, 수화뉴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장애인전문채널입니다.

복지TV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시설물들이 너무 많아 지방자치단체장과 스타들이 출연하여 해당 지역의 도로 및 건물 등의 시설물들을 장애인의 시선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재조명하는 “출동! 사랑만들기(가제)”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거나 이를 방영하는 것에 대한 당사의 질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거나 방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하다고 회신 받았는바,

1. 지방자치단체장이 프로그램중에 체험을 통해서 문제로 지적된 시설의 보완을 약속하거나 추후 그 시설보완사업을 실지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장이 동 프로그램중에 장애인단체[「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휠체어·목발·보행보조기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7. 5.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⑤ 정당집회 장소로써 주민자치센터 사용 관련

《질 의》

관내 민주노동당 서대문지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한 집회 신청 요청이 있어 우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원칙)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적용 시설 대여를 미승인 하였으나,

정당의 입장은 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 제3항, 제5항에 의거 ‘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 장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를 적용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을 재차 요구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을 승인해야 되는지, 우리구 조례를 적용 시설이용을 미승인 해도 되는지 당의 집회일정을 감안하여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집 회 내 용】

- 집 회 명 : 2007년 정세전망과 대통령선거
- 일 시 : 2007. 5. 28(월) 19:00 ~ 22:00
- 참석대상 : 민주노동당 서대문구 당원 70 ~ 80명

《답 변》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당원집회의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가 있는 경우 동 조례에 따라 그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41조제5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것이나, 귀 구청 조례의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규정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모든 정당에게 당해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는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 (2007. 5.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6 노인복지센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지원 관련

《질 의》

우리 완주군 노인복지센터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활기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동절기에는 온천욕프로그램을 하절기에는 수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 운용시 어르신들의 이동수단으로 우리군의 관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바 노인복지센터에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노인복지센터’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지역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가사지원, 심부름 등)를 지원하는 시설이며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외에도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답 변》

귀문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45조·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07. 5.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7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일손돕기사업 가능 여부 관련

《질 의》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년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농촌의 일손이 많이 부족하여 적기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영농철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농촌일손돕기가 가능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답 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농업·농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2007. 5.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8 지방자치단체의 구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관련

《질 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선4기 구정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구청장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공약사항 등)들을 구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이를 반드시 이행하기 위한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선4기 약속사항 실천 구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첫 번째로 이러한 구민평가단의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구민평가단 구성의 주체가 구청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처럼 순수민간인이 구성주체가 된다면 구성이 가능한지 등 구민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 두 번째 구성이 가능한 경우
 - 가. 구청이 주관하여 구성이 가능하다면 이를 운영함에 구청이 주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나. 순수민간인이 구성주체(매니페스토 운동)가 되어 구성할 경우 그 운영에 있어 구청에서 운영을 위한 자료(예 ; 공약사항 관련자료 등)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3. 세 번째로 조례나 규칙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이를 근거로 구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상기 사항들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적용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구에서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의 일환으로 순수민간인으로 구성된 「민선4기 약속사항 실천 구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투명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답 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그 평가단 또는 평가결과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구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 (2007. 5.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률제8492호, 2007.5.25공포]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개발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의 원칙 등(안 제3조)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함.

나. 공시대상정보(안 제5조 및 제6조)

- (1)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생변동 상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 (2)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학생현황 및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다.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자료의 공개(안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 (1) 교육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공시대상정보 중에서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과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
-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공시정보를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시정 권고 등(안 제7조 및 제10조)

-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도록 함.
-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개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도록 함.
- (3) 시정권고 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준용하여 학생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학술연구의 진흥 등(안 제8조 및 제11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법률[법률제8491호, 2007.5.25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사업주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용자·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담금 징수 및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민법」이 정하는 시효중단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용자·지원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의 근거 마련(안 제23조)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용자 또는 지원을 받거나 용자 또는 지원금을 사업목적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3년간 용자 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안 제31조)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2년간 고용장려금

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의 확대(안 제41조제1항제7호)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를 추가함.

라.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併記)함.

마.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절상한다”를 “올린다”로, “새로이 진행한다”를 “새로 진행한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게 자연스럽게 배치함.
-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아.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31조,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0065호, 2007.5.23공포]

1. 제정이유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58호, 2006. 5. 24. 공포, 2007. 5. 25. 시행)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방법 및 기간, 청구인서명부 작성·열람 등의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안 제2조)

- (1)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해당 선거구 안의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전체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의 3분의 1 이상에서 각각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의 최소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해당 선거구별로 전체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의 3분의 1 이상에서 각각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 (가) 시·도지사 : 해당 시·군·자치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 (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해당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 (다) 지방의회의원 :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

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 (3)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이 특정 지역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서명요청 활동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1)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방법,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작성 등 주민소환투표청구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 공표일부터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120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을 요청하도록 함.
- (3) 서명요청 활동기간 및 서명요청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소환투표청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열람(안 제8조)

- (1)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열람을 통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별로 공개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3)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열람을 통하여 서명부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명부의 적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안 제9조)

- (1)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서명 등에 대한 심사·확인 등의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주민

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심사하여 유효 또는 무효를 확인하도록 함.

- (3)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서명 등에 대한 심사·확인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④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8479호, 2007.5.17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골재채취와 관련된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실·부적격 업체가 양산되고, 이들로 인한 환경훼손과 골재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함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마다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골재채취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복구공사의 내실을 기하고 복구공사의 하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복구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신고의무(안 제14조제3항)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골재채취업 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의 취소사유 추가(안 제19조 제1항 및 제31조제1항)

골재채취업자의 영업정지기간 중의 영업행위를 골재채취업 등록의 취소사유로 정하고,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골재채취 중지명령 기간 중의 골재채취를 골재채취허가의 취소사유로 명확히 정함.

다.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요건의 구체화(안 제21조)

- (1) 시장·군수·구청장의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업무현황 등의 보고 요구나 시설·장비 등에 대한 검사 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필요 이상으로 빈번하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검사가 실시될 우려가 있음.
- (2)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골재채취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골재채취의 허가기준 및 골재채취증력의 평가·공시(안 제22조제6항 및 제22조의3 신설)

골재채취 허가시 허가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공시하도록 함.

마.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복구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의 도입(안 제29조제4항 내지 제8항 신설)

- (1)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복구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복구공사 완료 후에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여 주민의 안전을 해치거나 골재채취업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2)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한 후에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구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에 대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9조·제22조의 3·제2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5 경관법 제정법률 [법률제8478호, 2007.5.17공포]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에 의한 경관협정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안 제6조·제8조·제10조 및 제11조)

- (1)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활동이 체계적이면서도 융통성 있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경관관리 행정체계와 실천방안 등을 포함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3)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경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면서도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자율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사업의 시행(안 제13조 내지 제15조)

-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 (2)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등의 경관사업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일관성 있는 경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경관사업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게 하는 한편, 경관사업의 소요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3) 지역주민·전문가 등의 참여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의 도입(안 제16조·제18조 및 제22조)

- (1)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의 형성을 위하여 법적 규제를 통한 피동적인 방식보다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함.
- (2)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만 미치도록 하는 한편, 경관협정을 체결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경관협정의 체결 및 실행을 위하여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3) 경관협정을 매개로 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23조 및 제24조)

- (1)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
-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에 경관계획의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경관위원회를 따로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3) 무분별한 경관사업의 시행을 방지하고 경관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의 활용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⑥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8461호, 2007.5.17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종이문서의 보관 의무를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을 보완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 보관요건의 보완 (안 제5조)

- (1) 종이문서 보관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전자문서 중 종이문서 등을 스캐너를 통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전자화문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형태면에서 전자화대상문서인 종이문서 등과 동일하게 작성되고 전자문서의 보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보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3) 전자화문서의 보관이 촉진되어 문서보관비용의 절감 및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정기점검제도 도입 (안 제31조의8 제4항 및 제31조의10 신설)

- (1)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등을 위하여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후에도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에 대하여 외부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함.

(2) 산업자원부장관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 보관소가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영업의 양도·합병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도 (안 제31조의14 신설)

-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게营业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문서의 계속 보관 여부에 대하여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营业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 이용자에게 营业의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营业 폐지 시 보관문서 인계 제도 (안 제31조의15 신설)

-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营业을 폐지하는 등의 경우에도 문서보관 업무의 계속성 확보가 필요함.
-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营业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전자문서를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인계하도록 하고,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하여금 보관문서를 인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3) 전자문서 보관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454호, 2007.5.17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바, 이러한 수·위탁거래 과정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수탁기업들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을 다양화하여 협력기업의 협상능력을 높이고, 위탁기업이 어음 등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에게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하며, 상습적인 불공정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의한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교육명령제도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의 다양화(안 제17조)

협력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할인료 지급의무(안 제22조제4항 신설)

위탁기업이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함.

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도입(안 제24조의2, 제25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

구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안 제27조제5항 신설)

위탁기업이 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그 벌점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교육명령 등(안 제28조의2 신설)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수·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개선요구 및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⑧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8449호, 2007.5.17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자 연령이 19세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국민투표법」상의 투표권자를 20세 이상의 국민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조정하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이 없는 자를 국민투표권이 없는 자로 규정하며, 국민투표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제 8448호, 2007.5.17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범죄예방·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화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제정법률[법률제8435호, 2007.5.17공포]

1.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안 제2조·제3조 및 제7조)

-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안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안 제14조 및 제15조)

-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 (3)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안 제76조 및 85조)

- (1) 현행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3) 현행 「호적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변동사항의 통보(안 제98조)

- (1)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2)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사.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17조 내지 제119조)

-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3)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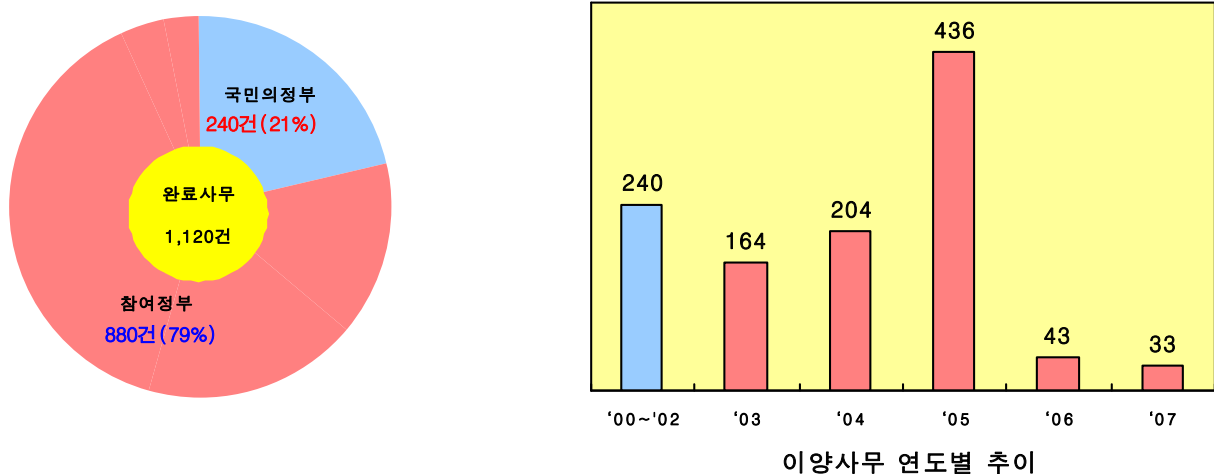
① 해외이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관련

-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박응격 한양대 교수)는 6월8일(금) 제44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열고 외교통상부의 해외이주 알선업 및 해외이주 신고 등에 관한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심의·의결하였다.
- 「해외이주 알선업에 관한 사무」는 국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주민의 접근성을 쉽게 하여 주민 편익증진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고할 수 있고,
- 「해외이주 신고 등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해외이주 신고시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를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민원인 편의제고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안건 심의와 별도로
 -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택지개발사업 지구 지정 및 승인권한에 관하여 지방이양 사무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실시하고 차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거친후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이양 결정된 사무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께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해당법령 개정 등의 이행조치를 하게 된다.

- 한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99년 출범한 후 지금까지 총 252회 회의를 개최하여 총 1,449건의 사무를 지방이양 확정하고 1,120건을 이양완료 하였다. 이 가운데 참여정부 이후 이양 완료한 사무의 건수는 880건으로 참여정부 이전 대비 367%나 급증하여 지방이양 가속화 및 지방분권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 앞으로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인구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차등이양을 활성화 시키고,
 - 안전발굴에 있어서도 이양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개발, 도시, 산업분야의 중점 이양을 위해 이 분야 전문가 그룹의 연구·토론 및 연구과제 발표,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양사무 현황 및 연도별 추이

【도 표】



제44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심의안건(요약)

□ 심의·의결 대상 사무 : 1개 부처, 2개 기능, 9개 사무

부처명	기능사무	단 위 사 무 명	이양방향
외 교 통상부	해외이주 알선업에 관한 사무	1. 해외이주 알선업의 등록 2. 해외이주 알선업의 변경 등록 3. 해외이주 알선료·수수료 책정 신고 4. 해외이주 알선업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5. 해외이주 알선업의 등록취소 등 6. 해외이주 알선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청문	국가 → 국가, 시·도
	해외이주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 해외이주 신고 2. 해외이주의 포기 신고 3. 영주귀국의 신고	국가 → 시·군·구
	☞ 해외이주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 해외이주 종류 : 연고이주, 무연고 이주, 현지이주		

②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 관련

- 행자부는 납세자 편익증진, 세제의 공평성·합리성 제고 등 경제·사회 여건에 변화에 맞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세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 지방세 제도개선을 과거에는 주로 중앙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지방세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지방세의 취지를 살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제도개선 초기단계부터 직접 참여토록 하여 주인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를 운영해 왔다.
 - 특히, 올해에는 중앙과 지방공무원 외에 조세전문가(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원 소속 3명)를 토론회에 참여시킴으로서 폭 넓은 의견수렴과 동시 지방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 2007년 제도개선 합동토론회는
 - 연초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세 제도개선 건의과제 208건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 제1차 토론회는 '07.3.20~3.23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제2차 토론회는 4.24~4.27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각각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41건(법 개정사항 20, 시행령개정사항 15, 조례개정사항 6)을 개선과제로 채택하였다.
- 2007년도에 채택되어 지방세법령 개정에 반영할 41건에 대하여는 6월 초까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개정여부를 확정 한 후 이를 토대로 지방세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토론회결과는 최종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③ 동사무소 명칭변경, 과소동 통폐합 추진 관련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6월 7일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 사무소의 명칭변경과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정부는 '05년부터 읍면동에서 복지·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추진해왔으며, 금년 7.1부터 이를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05년부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행자부와 관계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서
 - '06.7.1 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에 착수하였고, '07.1.1 2단계로 129개를 추가하였으며, '07.7.1부터는 나머지 50개 시군구를 포함한 전지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복지·보건·고용·주거·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분야의 서비스를 읍면동 사무소 중 어느 한곳만 방문하여도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읍면동의 기능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이 완료된 도시지역의 동 사무소 명칭도 변경된다.
 - 이는, 현행 “동사무소” 명칭이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어울리지 않고, 동의 기능이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탈바꿈한 사실을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명칭변경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선정위원회를 구성, 여론조사 등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7월중 명칭을 확정,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명칭(안) : 『00동 주민생활지원센터』, 『주민센터』, 『주민복지센터』 등

□ 아울러, 동이 주민생활 관련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동의 통폐합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지난 6.1 시·도 조직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기본방향을 시달하였다.

- 소규모 동의 통폐합은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되, 통폐합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 남는 시설은 지역실정에 따라 보육, 문화·복지 등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 잉여인력은 복지 등 신규수요 발생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 행자부가 이날 제시한 과소동 통·폐합의 기준은 인구 1만명(또는 지역에 따라 2만명) 미만, 면적 3km²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인접동과 통폐합토록 하되
 - 통폐합후 적정인구는 『2만명~2만5천명』, 면적은 『3~5km²』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 경우 전국적으로 300여개 정도 통폐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대상지역 인구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2만명(서울), 1만명(경기), 7,500~1만명(전남), 1만명(부산) 등 의견이 다양

○ 이에 따라 필요한 복지분야 인력 1,500여명(1개 동당 5명)을 신규 충원없이 확보할 수 있고,

- 폐지되는 시설을 활용할 경우 부족한 복지시설확충 및 동사무소 운영비 절감이 기대된다.

※ 서울시의 경우 시설건립비 4,000억원(40억원×100개), 폐지되는 동사무소 운영비 연간 150억원 등의 절감 예상

○ 행자부는 현재 인구와 면적기준 등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6월중 지자체별, 유형별 특성에 맞게 동의 적정 규모 등 통폐합의 세부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앞으로 주민들이 읍면동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 주민의 삶의 질 및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자료 >>

목 차

1. 동의 일반현황 및 기능변화	1
① 동 연혁 및 일반 현황	1
② 행정수요변화	2
<참고1> 복지서비스 확대 사례	3
③ 동의 기능 변화	4
<참고2>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개요	5
2.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7
3. 과소동 통폐합 추진	8
<참고3> 시·도별 소규모 동 현황	10

1. 동의 일반현황 및 기능변화

1] 동의 연혁 및 일반 현황

□ 동의 연혁

- 동은 조선시대부터 향·촌·리 등과 함께 준 자치적 단체로 존재, 1909년 이전에 이미 법정 행정구역으로 발전, 1914년 행정구역 대개편시 오늘의 명칭과 규모를 갖게됨
- '49 지방자치법 제정시 시·읍·면·구에 동 설치(현재의 법정동), '61 행정동제 도입, '88 동을 읍·면·동과 동일한 지위로 규정
- 읍·면·동은 주소 등에 사용되는 행정구역이면서 시군구의 하부행정기관

◀ 행정동 제도 ▶

◆ 구역·주소로 사용되는 “법정동”과 행정운영상 “행정동”으로 구분 전국적으로 법정동은 3,486개, 행정동은 2,166개('07.1.1 현재)
 예) 법정동: 신림동 / 행정동: 신림본동, 신림1동~13동

◆ 행정동 통폐합은 지자체가 조례로 자율시행(지방자치법 §4⑤)

□ 동의 일반현황

- 인구규모별 행정동 현황 ('0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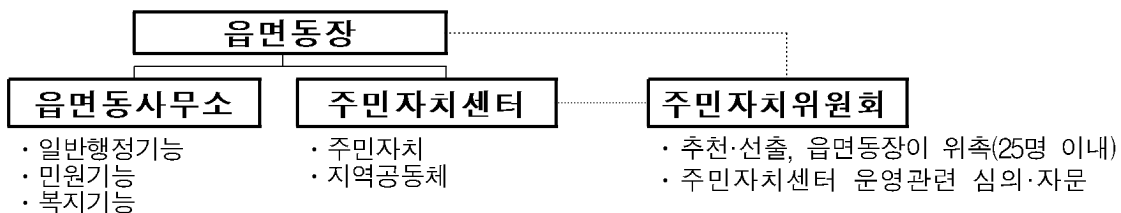
	5천 미만	5천~1만	1만~2만	2만~3만	3만 이상
동수(개)	133	417	768	559	289
비율(%)	6.1	19.3	35.5	25.8	13.3

※ 규모(평균) : 인구 18천명, 면적 4.70km², 공무원 12명

- 인력 현황 ('06. 9.)

계	읍	면	동
총49,503명	평균 27명	평균 16명	평균 11명

- 읍면동의 기구



2 행정수요변화

□ 일반행정수요

- 전산화·정보화에 따라 업무처리가 간편·신속하게 되었으며,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되어 종전에 비하여 업무비중 감소
- 전국 On-line으로 동(洞)간·지역간의 경계가 없어져 전국 어느 동에서도 타 지역 민원처리 가능

※ 주민등록 전산화('05 완료), 무인발급 서비스 39종, 인터넷 증명발급(31종)

◀ 민원·발급 행정의 전산처리 ▶

- ◆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종류(39종)
 - 주민등록등·초본, 호적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의료급여증명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기부 등본 등
- ◆ 인터넷 민원 증명 발급(31종)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출입국·국적 관련 사실증명, 보훈 관련 대상자 증명, 해양수산 실적증명, 화재증명원 발급신청 등

□ 복지 및 문화행정수요

- 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증가 및 확대 지속
 -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긴급복지지원, 차상위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등 '02년~'07년까지 21개 신규서비스 신설
 - '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 실시

<서울시의 복지대상자 변화>

(단위 : 명)

구 분	노인수		장애인수		보육아동수		기초생활수급자수	
	2001	2006	2001	2006	2001	2006	2001	2006
대상인원	589,174	786,580	188,660	324,560	139,814	177,952	168,897	196,575
증가율(%) ('01년 대비)	-	33.5%	-	72.0%	-	27.3%	-	16.4%

- 어린이·여성·노인 등 다양한 욕구, 개성과 글로벌 의식을 가진 디지털세대 및 도시디자인·관광마케팅·교육 등 신규수요 증대

참고1	복지서비스 확대 사례
-----	-------------

구 분	계	신규 서비스 신설 내역 (예시)
계	21	
2002	4	◦ 보호대상자의개별화확대 : 북한이탈주민·교정시설출소예정자등 ◦ 노인복지 서비스 증가 : 노인인구 대폭 증가, 수당지급, 서비스 연결 ◦ 보육료 지원 기준완화 및 세분화 ◦ 결식아동 지원사업 교육청 연계 : 지원대상자 대폭증가
2003	5	◦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확대 :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수급자 ◦ 장애등급의 세분화 ◦ 자활장려금지급 ◦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관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사업(대상자 선정 및 명단통보)
2004	3	◦ 의료급여 생계지원 세분화 : 초과일수 및 장기입원자 일할계산 지급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 서울그린실버봉사대·노인도우미파견· 틈새계층노인 자활센터 등 ◦ 자원봉사확대
2005~ 2006	3	◦ 다세대주택 임대사업 :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긴급복지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 노인도우미파견, 은빛배달부 등
2007	6	◦ 교복비 지급 ◦ 차상위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 다둥이카드 ◦ 바우처사업 ◦ 노인일자리사업확대 : 청소도우미파견·실버제조지도자파견 등
2008	1	◦ 기초노령연금

③ 동의 기능변화

(1) 동의 기능변화 연혁

□ 과소동 통폐합

- '95년부터 감량경영과 기능전환에 대비, 과소동 통·폐합 추진
 - 인구 5,000명 미만(평균 1/3수준) 323개동 대상
- '00년까지 274개 동 통·폐합
 - 대구(22), 광주(24), 대전(12), 울산(4), 강원(57), 충남(5), 전북(29) 등
 - 도서·산간지역, 면적이 과다한 농촌지역은 통합 제외
 - ※ 서울은 대상 12개 중 10개, 경기도는 27개 중 8개동 통폐합
 - '07년까지 나머지 49개 중에서 7개동 추가 통폐합
 - ※ '85년: 1,794개 → '90년: 2,104개 → '95년: 2,317개 → '07년: 2,166개

□ 읍면동 기능전환

- '99~'02, 읍·면·동을 생활민원·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여유허공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 민원,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등은 읍면동에 존치(39%), 지방세, 건설, 교통 등 일반행정 사무는 시군구로 이관(61%)
 - ※ 인력은 30~40%(동 15→9명, 읍 35→25명, 면 18→13명) 재배치 및 감축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추진

- '05.2.25,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선방안』 마련
- 읍·면·동 기능을 복지, 문화 등 8대분야의 주민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개편 착수('06.3)
 - 1단계 53개 시군구('06.7)→2단계 129개('07.1)→3단계 50개('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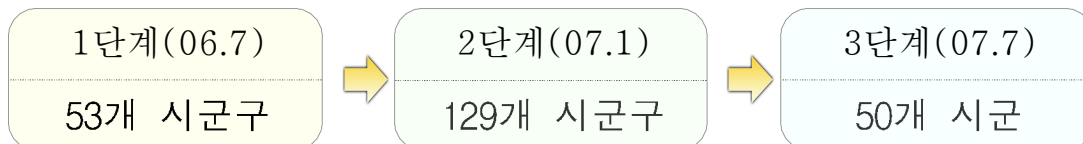
참고2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개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이란?

-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는 광의의 복지개념으로서
- 이들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복·누락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고객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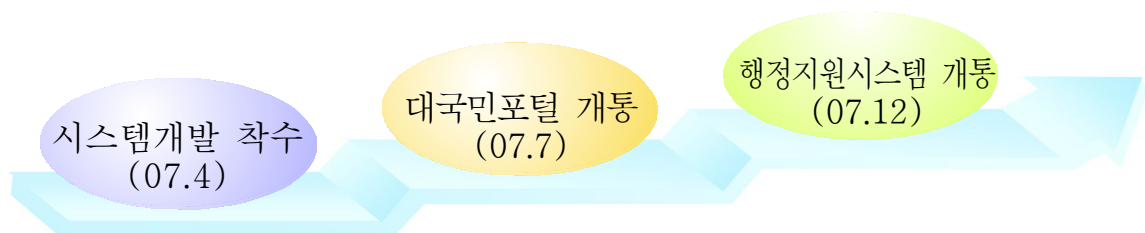
①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및 상담실』 설치

○ 시군구 : 주민생활지원국·과 / 읍면동 : 주민생활지원팀



※ 행정인력 전환배치(3,960명), 공무원 특별교육(16,973명), 상담실 설치(1,962개 읍면동)

②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이 가능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대국민포털 : 주민생활에 필요한 정보조회, 서비스 및 상담 신청
└ 행정지원시스템 : 시군구·읍면동 공무원 통합조회·연계 및 사후관리

③ 8개 중앙부처 서비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49개 서비스 중 『유사·중복 61건을 조정대상』으로 발굴, 부처협의 중

④ 『민관협력체계 구축』 통한 지역 서비스자원 활용 효율성 제고

(2)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에 따른 동 기능변화

□ 기능 변화

- 동의 단위사무 감소(36분야 211개 사무 → 32분야 177개 사무)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4분야 34개 사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복지관련 사무는 10분야 53개 사무)

※ 차상위계층 조사 등 복지관련 조사사무 1분야 19개 사무 이관

□ 변화 내역

분 야	현 제 기 능	이관된 기능
예산·감사 등 6분야	예산 및 자금배정 요구, 감사지적사항 처리 등 29단위사무	자율방법대 운영 등 2단위사무
투 표	투표인명부 작성 등 7단위사무	
선 거	선거인명부 작성 등 10단위사무	
세정·경리 등 4분야	세목별과세(납세)증명, 일상경비 출납 등 9단위사무	불용품매각
주민등록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등 23단위사무	국외이주신고 수리
호 적	출생·사망 신고수리 등 6단위사무	
민 원	인감증명 발급 등 15단위사무	
사실증명 등 3단위사무	농어민사실증명 등 9단위사무	모두 이관
체육지원·민방위 등 4분야	체육행사 개최 등 28단위사무	재해(수해)피해실태조사
국민기초	신규신청자 초기상담 및 신청접수 등 11단위사무	신규신청자 실태조사 등 3단위사무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급여신청 등 6단위사무	차상위계층 조사
자활사업	자활근로임금 지급자료 생성 등 6단위사무	신규기초수급자의 조건부수 급여부 판정 등 3단위사무
의료급여 노인 복지 등 7분야	의료급여증 교부 등 49단위사무	신규 차상위의료급여신청 자 조사 등 12단위사무
보건 청소 농지	방역소독 등 3단위사무	방역소독

2. 읍면동사무소의 명칭변경 추진

□ 추진배경 및 경위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이 1·2단계 시행에 이어 금년 7월부터 전국적 시행으로洞기능이 일반행정에서 주민생활기능으로 전환
- 통합서비스 제공 등으로 변화된洞사무소의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알리고 그 기능에 맞게洞의 명칭도 변경 필요성 절실
- '06.4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본격 추진시, 읍면동사무소 명칭관련 설문조사 실시
 - 주민생활지원사무소, 주민문화복지센터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관계부처 회의시 전면 시행시점('07.7)에 검토의견 제시

□ 현재 거론되는 명칭

- ○○동 주민센터, ○○동 주민복지센터, ○○동 주민생활센터, ○○동 주민서비스센터 등
- ⇒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洞기능에 맞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명칭으로 선정

□ 향후 일정

-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선정위원회 구성(6월 중순)
- 명칭변경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실시(6월 중순)
 - 일반국민, 공무원, 전문가, 정책고객 등 18,000여명
 - 공청회, 언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실시
- 추진단 추진위원회 보고 및 명칭선정위원회 최종결정(7월초)
- 동사무소 명칭변경 시행 및 현판식(9월)

3. 과소동 통폐합 추진

□ 추진 배경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소동을 통폐합하고 그 잉여인력, 유휴시설을 복지 분야로 전환함으로써
-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교통·통신 발달 등으로 인력·시설 통합운영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과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본 시책을 전 지자체로 확산 필요

◀ 지자체 동 통폐합 사례 ▶

- ◆ '07. 5. 서울시: 마포구에서 '07.1 4개 동 폐지하고 잉여인력 전환재배치.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
- ◆ '07. 5. 경기도: 대도시 인구밀집지역 및 2만명 이하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 추진 등

□ 기본 방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추진

- 인구수·면적을 기본으로 하되 민원행정수요·생활권·지리적상황(예:아파트밀집)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 인구규모별 행정동 현황('07. 1. 1.) >

	5천 미만	5천~1만	1만~2만	2만~3만	3만 이상
동수(개)	133	417	768	559	289
비율(%)	6.1	19.3	35.5	25.8	13.3

※ 규모(평균) : 인구 18천명, 면적 4.70km², 공무원 12명

②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

- 폐지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원거리로 인한 불편을 경감토록 하고
- 폐지시설을 공공보육시설, 공공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재 활용하여 더 많은 서비스 제공

③ 잉여인력은 복지 등 신규행정수요 분야로 전환·재배치

-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배치하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과 연계하여 복지분야 전환·재배치 방안 검토

※ 동 통폐합시 1개 동당 4~5명의 잉여인력 발생 예상 (동장 1명, 6급 1~2명, 7급 서무 1명, 운전기사 1명 등)

- 원활한 재배치를 위해 재배치 인력에 대한 인사상 우대, 소수·특수직렬 활용방안 강구

④ 지자체 의견수렴 통한 지자체 유형별 적정기준 마련

- 분동기준(50천명, 3km²), 평균 규모(18천명, 4.7km²), 과거 통폐합 사례(5천명) 및 지리적 특성·인구구성 등 지역특수성 고려
- 지자체 유형별 통폐합 적정기준을 마련, 가이드라인 제시
- 선도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등 인센티브 부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 기반 마련

□ 향후 일정

- 지자체 유형별 적정기준 마련위한 시·도 의견수렴: '07. 6월초
- 필요시, 과소동 통폐합 기준마련 및 지침시달: '07. 6월중
- 통폐합 추진성과 분석, 인센티브 부여: '08년초

참고3 시·도별 소규모 동 현황

구 분	1만명 미만		1만이상~2만명 이하	
	동수	자치단체별 동수	동수	자치단체별 동수
계		550개		768개
서울 (522)	65	종로(14), 중(9), 용산(9), 성동(1), 동대문(3), 중랑(1), 성북(7), 은평(2), 서대문(4), 마포(4), 구로(1), 영등포(2), 서초(1), 강남(1), 송파(4), 강동(2)	211	종로(5), 중(6), 용산(10), 성동(16), 광진(4), 동대문(20), 중랑(7), 성북(17), 강북(8), 도봉(3), 노원(5), 은평(2), 서대문(13), 마포(14), 양천(6), 강서(4), 구로(6), 금천(5), 영등포(11), 동작(11), 관악(15), 서초(3), 강남(10), 송파(6), 강동(4)
부산 (218)	69	중(7), 서(10), 동(17), 영도(4), 부산진(6), 동래(2), 남(5), 해운대(1), 사하(1), 금정(5), 강서(6), 연제(1), 사상(4)	92	중(2), 서(3), 영도(5), 부산진(11), 동래(7), 남(11), 북(5), 해운대(8), 사하(6), 금정(11), 강서(1), 연제(10), 수영(7), 사상(5)
대구 (134)	26	중(12), 동(2), 서(2), 남(1), 북(5), 수성(3), 달서(1)	67	중(1), 동(13), 서(13), 남(12), 북(9), 수성(10), 달서(9)
인천 (123)	21	중(8), 동(9), 남(4)	32	중(1), 동(2), 남(12), 연제(1), 남동(4), 부평(5), 서(7)
광주(91)	35	동(10), 서(4), 남(7), 북(5), 광산(9)	31	동(3), 서(6), 남(6), 북(13), 광산(3)
대전(80)	17	동(10), 중(4), 서(1), 대덕(2)	31	동(8), 중(10), 서(9), 대덕(4)
울산(46)	6	중(2), 남(1), 동(1), 북(2)	19	중(7), 남(4), 동(6), 북(2)
경기 (391)	51	수원(4), 성남(5), 고양(9), 안양(1), 안산(2), 의정부(1), 남양주(1), 평택(4), 광명(1), 시흥(1), 군포(1), 구리(1), 하남(6), 의왕(1), 양주(3), 오산(1), 동두천(5), 과천(4)	108	수원(9), 성남(16), 의정부(5), 안양(18), 부천(13), 광명(12), 평택(3), 동두천(1), 안산(3), 고양(5), 과천(2), 구리(1), 남양주(1), 오산(2), 시흥(3), 의왕(1), 하남(2), 용인(3), 이천(2), 안성(2), 화성(2), 포천(2)
강원(74)	40	춘천(7), 원주(5), 강릉(7), 동해(7), 태백(7), 속초(5), 삼척(2)	20	춘천(5), 원주(7), 강릉(3), 동해(1), 태백(1), 속초(1), 삼척(2)
충북(50)	16	청주(5), 충주(6), 제천(5)	17	청주(10), 충주(4), 제천(3)
충남(40)	12	천안(2), 공주(4), 보령(2), 아산(2), 서산(1), 계룡(1)	15	천안(4), 공주(1), 보령(3), 아산(2), 서산(4), 논산(1)
전북(85)	31	전주(3), 군산(10), 익산(5), 정읍(6), 남원(6), 김제(1)	37	전주(20), 군산(7), 익산(4), 정읍(2), 남원(1), 김제(3)
전남(66)	40	목포(12), 여수(13), 순천(7), 나주(6), 광양(2)	15	목포(9), 여수(2), 순천(2), 광양(2)
경북 (100)	50	포항(4), 경주(8), 김천(5), 안동(5), 구미(9), 영주(6), 영천(4), 상주(4), 문경(3), 경산(2)	25	포항(7), 경주(3), 안동(4), 구미(2), 영주(3), 상주(2), 문경(2), 경산(2)
경남 (115)	52	마산(13), 진주(7), 진해(7), 통영(8), 사천(5), 김해(4), 밀양(3), 거제(4), 양산(1)	41	창원(1), 마산(12), 진주(13), 진해(7), 통영(3), 사천(1), 김해(1), 밀양(2), 거제(1)
제주(31)	19	제주(8), 서귀포(11)	7	제주(6), 서귀포(1)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지방의원 신분변동 보도 관련

2007년 6월 13일(수) 3:01 [동아일보]

대전지역 현직 광역시의원이 모르고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는 바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동구 3선거구 한나라당 장문철(56) 의원은 지난해 10월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하게 되자 본인 주소를 현재의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서울로 옮겼다.

장 의원은 의정활동 때문에 생활을 거의 대전에서 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장 의원이 주소지를 서울로 옮긴 것이 확인된 것.

장 의원의 차량 번호도 서울지역 번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70조 2항에는 '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나 폐지분합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피선거권이 없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전시의회는 이 같은 전례가 없던 점을 감안해 행정자치부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으나 행정자치부는 의원직 박탈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의원직 상실 시점이 지난해 10월로 결정된다면 장 의원은 의정비 등을 반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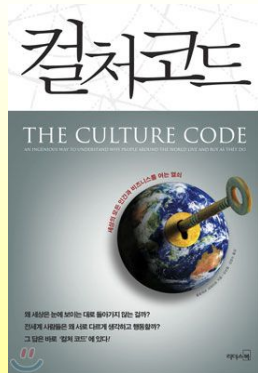
조선인 장 의원은 "가족이 이사할 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주소를 옮기게 됐다.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주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78조 (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부록 :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컬처 코드

저자명 : 클로테르 라파이유

출판사 : 리더스북

출판년 : 2007년

페이지 : 296

가 격 : 13,000원

컬처 코드란 한마디로 “특정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일정한 대상에 부여하는 무의식적인 의미”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코드는 각자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경험한 문화를 통해 획득되며, 따라서 어린 시절을 어떤 문화 속에서 보내느냐에 따라 코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미국 문화에서 자란 사람과 프랑스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 똑같은 땅콩버터와 치즈를 보고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이다. 이것은 왜 미국에서는 축구가 아닌 야구가 국민적 오락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이며,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가 프랑스에서는 슬로푸드가 생겨난 이유이기도 하다.

컬처 코드는 어떤 문화이든 고유한 정신적 경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고유한 정신적 경향이 미국인을 미국인답게, 프랑스인을 프랑스인답게,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일본인을 일본인답게 만들어준다. 컬처 코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서로 다른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컬처 코드는 우리 자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왜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가 되어준다.

컬처 코드는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쇼핑, 건강, 음식, 사랑, 직업, 정치 등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드를 알면 왜 세상이 눈에 보이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지, 왜 전세계 사람들은 그토록 다르게 행동하고 판단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컬처 코드’는 어디에 존재하고,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컬처 코드라는 문화적 무의식은 제3의 무의식으로서 인간의 뇌 중에서 생존과 생식을 관장하는 ‘파충류 뇌’에 감춰져 있다. 이것은 컬처 코드가 이성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각인’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각인은 대개 7세 이전의 강렬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라파이유 박사는 사람들의 파충류 뇌에 각인된 무의식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코드를 찾아낸다. 그리고 이 코드를 다른 문화에서 찾아낸 코드와 비교함으로써 동일한 사물이 다른 문화에서는 어떻게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를 밝혀낸다.

라파이유 박사의 이 독특한 작업은 전세계 모든 인류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라파이유 박사는 기업의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욕망’과 조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실제로 라파이유 박사는 코드 분석 작업을 통해 기업들을 대신해 고객들의 ‘욕망’과 조우했으며, 그 결과는 해당 기업들이 획기적으로 수익을 제고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 책 《컬처 코드 - 세상의 모든 인간과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그 비밀 병기를 세상에 최초로 공개한 책이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